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73
----------	-----

2017. 9. 11.(월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순묵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1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8월 30일

(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임순묵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신기술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을 제고하기

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 심의사항 신설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정일하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추가하여 건설신기술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인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,
-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
- 「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」 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규정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
- 입법예고('17. 8. 14.~'17. 8. 20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추가하여 건설신기술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생략)	제2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<u>도지사</u> 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③ ----- ----- <u>충청북도지사</u>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---.
1. ~ 3. 삭제	
제6조(위원회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6조(위원회 심의사항)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3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한 사항
<u><신설></u>	4.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
관 계 법 령

[건설기술 진흥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5.18., 2015.7.24.>

1. ~ 5. (생략)

6. "발주청"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(發注)하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

7. ~ 11. (생략)

제5조(건설기술심의위원회) ① 건설기술의 진흥·개발·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중앙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지방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(생략)

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,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며,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

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제17조(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생략)

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<개정 2016.11.29>

1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·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~ ⑨ (생략)